



직장 통합 방위 협의회 규정

규정번호	3-1-14		
제정일자	2010.03.01		
개정일자			
개정번호	Ver.0	총페이지	2

제1조(설치 목적) 이 규정은 대통령 훈령 제28호 2절에 의하여 설치한 동양미래대학 직장 통합방위협의회(이하 “직장협의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 및 운영) 직장협의회는 해당 직장예비군 부대의 장과 해당 직장의 간부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

- ① 총(학)장, 각 처장, 예비군대대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.
- ② 위원은 각 학부(과)장 및 부서의 교직원 중에서 총(학)장이 위촉한다.
- ③ 직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직장 단위 방위대책 및 그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 - 2. 직장예비군의 운영·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④ 직장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,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사업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여 시행하고 차기 회의에서 인준을 얻을 수 있다.

제3조(임원) 직장협의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의장은 총(학)장으로 한다.
- ② 부의장은 사무처장으로 한다.
- ③ 간사는 예비군 대대장으로 한다.

제4조(임원의 임무) ① 의장은 직장협의회를 통할한다.

-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본 직장협의회 회의록 작성 및 회무를 담당한다.

제5조(사업) 직장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한다.

- ①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
 - 1. 병력수송 및 물자지원대책
 - 2. 급식대책
 - 3. 민폐대책
- ② 예비군의 운영·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- 1. 예비군의 날, 국군의 날 등 범국민적 행사 지원
 - 2. 예비군 교육훈련시의 위문

- 제6조(회의록)** ① 직장협의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② 회의록에는 의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